

일 연계 정의 및 기준(안)

(2024.04. 기준)

일 연계 정의

중장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취업·창업·기타 형태로 연계된 건

일 연계 기준

| 구 분 | | 세부기준 | 비고 |
|-----|----|--|---|
| 일 | 취업 |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연계된 경우 [참고]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유형 참조 | 재정지원 일자리 중,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* 포함 가능 |
| | 창업 | 사업자등록(개인·법인), 조합 등 정식 단체를 설립한 경우 | 커뮤니티·동호회 등 비공식 단체의 설립은 인정하지 않음 |
| | 기타 |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나, 수입이 발생(수당 지급 등) 하는 일자리에 연계된 경우 [붙임] 기타 일자리 세부 구분표 참조 | 재정지원 일자리 중,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으나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** 포함 가능 |

예시) *서울시 뉴딜일자리, 4050인턴십(풀타임) 등 / ** 서울시 보람일자리, 4050인턴십(파트타임), 노인일자리 등

※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(예: 자원봉사 활동비, 커뮤니티 지원금 등)은 일로 인정하지 않음. 단, 단체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여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, '프리랜서'의 개념으로 '기타'로 인정함

□ 일 연계 유형별 구분

| 일 연계 형태 | 일 연계 유형 | 정의 | 4대보험 여부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| | | 국민 | 고용 | 건강 | 산재 |
| 취업 (고용보험 가입만 해당) | 정규직 |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형태(전일제)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무기계약직 | 기간 정함이 없는,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고용직으로 채용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기간제계약직 | 기간이 최대 2년 미만의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 근로자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특수고용직 (고용보험 가입) | 형식상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로, 노동자처럼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| X | ○ | X | ○ |
| | 파견직 | 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는 근로자 | 사업체/파견기업마다 상이 | | | |
| | 파트타임 (고용보험 가입) | 소속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| X | ○ | X | ○ |
| 기타 (고용보험 미가입 해당) | 프리랜서 (2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프리랜서 체크) | 소속 사업장이 없으며,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 (대가도 일급으로 수령) 회사나 집단에 근로계약 되지 않고, 자유계약에 의한 반복적 근무 | 예: 전문가/자문 수당 등 예: 시간제 강사 등 | | | |
| | 재단 일자리사업 참여 | 고용보험 미가입. 수입이 발생(활동비·인건비 지원)하는 재단 일자리 사업 | 예: 서울시 보람일자리 4050인턴십(파트타임) | | | |
| | 타기관 일자리사업 참여 | 고용보험 미가입. 수입이 발생(활동비·인건비 지원)하는 타기관(정부/지자체) 일자리 사업 | 예: 여성새일인턴 | | | |
| | 파트타임 (고용보험 미가입) | 소속 사업장에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| | | | |
| 창업 | 사업자등록(고유번호증) 발급 자 | | | | | |